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01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6.

발 의 자 : 정희용 · 백종현 · 김상훈
김기웅 · 박충권 · 김종양
고동진 · 구자근 · 김선교
주호영 · 박준태 · 이인선
강대식 · 김민전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이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, 안전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의 수를 같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안전조정위원회 위원 중 제1교섭단체와 연대하는 정당 소속의 위원이 있는 경우 안건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, 회부된 안건이 당일에 의결되는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현재 안전조정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것을 재적위원 6분의 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

안전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,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,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전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전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57조의2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의2제6항 전단 중 “3분의 2”를 “6분의 5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조정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3일 이상,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조정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적용례)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7조의2(안전조정위원회) ① ~ ⑤ (생 략)	제57조의2(안전조정위원회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안전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<u>3분의 2</u>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.	⑥ ----- ----- ----- <u>6분의 5</u> -----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⑦ <u>조정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안전을 의결하기 전에 해당 안전에 대하여 3일 이상,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조정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</u>
⑦ ~ ⑩ (생 략)	⑧ ~ ⑪ (현행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)